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9. 11. 20 ~ 12. 11(21일간),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업·조정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며 평창군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u>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u> 4. <u>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u> 5. (생략) 6. (생략)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p>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 <u>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u>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p>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평창군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평창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u>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